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,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근로자우대신탁 약관 (구 하나은행)

- 제 1 조 (약관의 적용) 근로자우대신탁(이하 "신탁"이라 합니다)거래에는 이 약관과 금전신탁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- **제 2 조 (위탁자 및 수익자)** 이 신탁의 위탁자는 근로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한다.
- **제 3 조 (신탁금액의 제한)** 이 신탁은 관법령이 정한 한도내에서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으며 매회적립금은 1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
- **제 4 조 (신탁기간)** 이 신탁의 신탁기간을 3 년이상 5 년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하여야 합니다.
- **제 5 조 (기간연장)**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당초 신탁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까지 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장에 의해 변경된 신탁기간은 당초 신탁기간을 포함하여 5 년 이내이어야 합니다.
- 제 6 조 (신탁이익계산) 이 신탁에 대한 신탁이익계산은 당행 소정의 방법에 따라 연 2 회 매 6 개월 단위로 일정일에 실시하며 이익계산일 익영업일에 원본에 가산합니다.
- **제 7 조 (특별중도해지)**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.
 - 1. 위탁자가 사망, 해외이주
 - 2. 천재지변
 - 3. 위탁자가 퇴직한 경우
 - 4.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
 - 5. 위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·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
 - 6.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경우
 - 7.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

2015.9.1 개정

- ②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.
- 제 8 조 (양도 및 담보 제공) ①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, 적립금액 범위내에서 본인명의 대출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- ② 상속으로 인한 계속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.
- **제 9 조 (세제 혜택)** ① 이 신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② 이 신탁은 3 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으로 인한 이미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징하게 됩니다.

제 10 조 (중복가입 통장의 정리)

삭제(2002.01.01)

- **제 11 조 (거래중지계좌)** ① 은행은 금전신탁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좌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 신탁내에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후 별도관리할 수 있습니다.
 - 1. 수탁잔액이 1 만원 미만이며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입 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 - 2. 수탁잔액이 1 만원 이상 5 만원 미만으로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입 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 - 3. 수탁잔액이 5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으로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입 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 - ②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익계산을 하지 않으며 거래처로부터 지급 등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해당계좌에 대한 신탁이익을 일괄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2 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